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22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정을호·이기헌·이훈기

김남근 · 김영환 · 추미애

문금주 · 김준혁 · 강유정

서삼석 · 모경종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있음.

학교안전사고의 대상 학교범위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또한, 학교안전사고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

부렁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청구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적시에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 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 제2장의 적용에 있어서는 학교로 보지 아니한다.

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 관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공제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 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학교안전공제 사 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단서 신설> 마목의 경우 제2장의 적용에 있어서는 학교로 보지 아니한 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공제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 생 시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 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 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 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 에게도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